
2024년도 미래 무형유산 발굴 · 육성 사업 계획(안)

2023. 5.



문화재청

무형문화재과

□ 추진배경

-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 부족과 지역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음
- 근현대에 새롭게 복원·재창조되거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미래의 문화자원으로 육성 필요
- 이북5도무형문화재 등 북한 기반 무형유산의 발굴과 지원으로 향후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필요

□ 추진목적

- 전승단절 위기에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을 지자체와 함께 보호하여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 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
- 국가·지자체·전승주체가 함께 지역 무형유산을 육성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정체성 및 공동체 강화

□ 2024년 추진방향



-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 분야 확대
 - 당초 연도별 선정분야를 규정하여 분야별 집중 육성을 시행하였으나, 여러 범주가 교섭된 종목이 다수인 무형유산의 특성을 고려,
 - 연도별 선정분야 제한 없이 무형유산 전 분야에서 공모·선정하여, 다양한 종목 지원을 통해 사업 활성화 제고
- 무형유산 특성을 고려한 종목 맞춤형 지원 강화
 - 종목별 전승현황 및 연구 활성화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종목에 적합한 지원사항을 제공
- 합리적 예산편성 기준 마련
 - 사업목적 및 지원유형에 적합한 지원금액 설정 및 세부 예산편성 기준 마련

II 공모개요

- 사업명: 2024년도 미래 무형유산 발굴·육성 사업
- 사업기간: 2024년 1 ~ 12월
- 사업내용: 지역의 가치 있는 비지정 무형유산을 선정하여 **종목 가치 발굴**(조사연구, 영상 및 책자 등 기록화), **전승환경 조성**(전승자 발굴·육성, 교육 등), **전승 체계화**(공연, 체험, 전시 등) 지원

| 지원 분야 | 내 용 |
|---------|---|
| 종목가치 발굴 | △ 무형유산의 전승현황 기록 및 가치 발굴을 위한 지원 · 해당 무형유산의 역사, 현황, 가치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· 구술채록 등 전승자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 · 영상, 기록사진, 책자발간 등 기록화 · 학술대회 개최 등 |
| 전승환경 조성 | △ 지속가능한 전승 토대 마련을 위한 지원 · 지역 전승자 발굴 및 교육 · 체험프로그램 운영 · 교육교재 및 영상 제작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· 전승네트워크(보존회) 구축 등 |

| 지 원 분 야 | 내 용 |
|---------|---|
| 전승 체계화 | △ 가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지원 · 전시, 공연, 행사 등 · 문화자원 개발 등 ※ 관광 위주 일회성 사업, 기존 축제·행사 연계 사업 등은 지원 불가 |

□ 사업대상

- (신규사업)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문화유산으로, 아래 범주에 속하는 종목 *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·도무형문화재 제외

| 범주 | 해당 무형유산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통적 공연·예술 | ○ 음악, 춤, 연희, 종합예술 등 |
| 전통기술 | ○ 공예, 건축, 미술 등 |
| 전통지식 | ○ 민간의약지식, 생산지식, 자연·우주지식 등 |
| 구전 전통 및 표현 | ○ 언어표현, 구비전승 등 |
| 전통적 생활관습 | ○ 절기풍속, 의생활, 식생활, 주생활 등 |
| 사회적 의식·의례 | ○ 민간신앙의례, 일생의례, 종교의례 등 |
| 전통적 놀이·축제 기예·무예 | ○ 놀이, 축제, 무예 등 |

(참고) 국가무형문화재 공동체 종목
 ▲ 아리랑, 제다, 씨름, 해녀, 김치담그기, 제염, 온돌문화, 장담그기, 전통어로방식-어살, 할쏘기, 인삼재배와 약용문화, 막걸리빚기, 떡만들기, 갯벌어로, 한복입기, 윷놀이

- (계속사업) 2022년~2023년 선정 종목
 * 붙임 2 참조 단, 2024년 이월(예정) 대상은 지원 불가

□ 신청자격: 광역지자체(자치단체 경상보조)

□ 보조금 보조율: 국비 50%, 지방비 50%

* 예산 상황에 따라 보조율이 변동될 수 있음

□ 선정규모: 30종목 내외 예정

□ **지원내용**

○ **사업비 지원:** 종목 당 매년 최대 2억원(국비5, 지방비5), 3년간

* 사업계획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, 우수 사업은 3년 추가 지원

** 세부 예산 편성 기준은 공모신청서 붙임자료 참조

| 지 원 유 형 | 지 원 상 한 액 |
|---------|--|
| 종목가치 발굴 | △ 최대 2억원 지원 · (2억 상한) 단체전승 공연·예술, 전통지식, 의식·의례, 구전 전통 및 표현, 생활관습, 단체전승 놀이·무예 등 · (1억 상한) 개인전승 공연·예술, 전통기술 개인전승 놀이·무예 등 |
| 전승환경 조성 | △ 최대 1억원 지원 · (1억 상한) 단체전승 공연·예술, 전통지식, 의식·의례, 구전 전통 및 표현, 생활관습, 단체전승 놀이·무예 등 · (5천 상한) 개인전승 공연·예술, 전통기술 개인전승 놀이·무예 등 |
| 전승 체계화 | △ 최대 1억 5천만원 지원 · (1억 5천 상한) 단체전승 공연·예술, 전통지식, 의식·의례, 구전 전통 및 표현, 생활관습, 단체전승 놀이·무예 등 · (7천 상한) 개인전승 공연·예술, 전통기술 개인전승 놀이·무예 등 |

○ **사업 모니터링·컨설팅:** 매년 사업 성과 평가,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

* 사업 평가 결과 부실 사업은 다음 연도 지원규모 조정

□ **공모 접수 및 심사 일정**



Ⅲ 사업 평가 및 선정

〈신규사업〉

□ 평가방법

- 1차 평가: 평균 70점 이상 중 2배수 내외 선정
 - 평가위원: 3명(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)
- 2차 평가: 1차 평가 통과 사업대상 종합 검토
 - 평가위원: 5명(무형문화재위원 등 외부전문가 3명 이상 포함)
 - * 신청규모에 따라 1차 및 2차 평가 통합 심사 추진
 - * 필요시 해당 지자체에 사업설명 요구할 수 있음

□ 평가기준(1·2차 공통)

| 심사항목 | 판단 기준 | 배점 | 평가점수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|------|----|----|----|----|
| | | | S | A | B | C | D |
| 무형유산 가치 (30) | · 무형유산으로서 역사적·학술적으로 한국 문화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가? | 10 | 10 | 9 | 8 | 7 | 6 |
| | · 무형유산으로서의 대표성·고유성이 있는가? | 10 | 10 | 9 | 8 | 7 | 6 |
| | · 공동체,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및 전승주체의 지속성이 있는가? | 10 | 10 | 9 | 8 | 7 | 6 |
| 추진 역량 (50) | · 사업계획이 무형문화재 발굴· 보호에 적합한가? | 10 | 10 | 9 | 8 | 7 | 6 |
| | ·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? | 20 | 20 | 18 | 16 | 14 | 12 |
| | ·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와 배치가 적절한가? | 10 | 10 | 9 | 8 | 7 | 6 |
| | · 해당 지자체의 추진 의지 및 관심이 적극적인가? | 10 | 10 | 9 | 8 | 7 | 6 |
| 효과성 (20) | · 종목 현황에 적합한 사업계획인가? · 종목을 지속적으로 전승하는 데 효과적인 사업인가? | 20 | 20 | 18 | 16 | 14 | 12 |
| 가점(5) | · 국민공모로 선정된 종목 | (5) | | | | | |
| 합 계 | | 100 | | | | | |

〈계속사업〉

□ 평가방법

○ 2023년 모니터링 평가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

- 평가위원: 3명(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)

* 기존 사업 진행사항 및 예산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

* 기존 사업수행 평가는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되, 작성 내용이 실제 진행상황과 다를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* 필요시 해당 지자체에 사업설명 요구할 수 있음

□ 평가기준

| 평가항목 | 판단 기준 | 배점 | 평가점수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|------|----|----|----|----|
| | | | S | A | B | C | D |
| 기존 사업 수행 (30) | · 사업 이행 절차가 계획에 따라 충실했는가? | 10 | 10 | 9 | 8 | 7 | 6 |
| | · 사업 성과물이 우수한가? | 10 | 10 | 9 | 8 | 7 | 6 |
| | · 기존 성과물이 현 사업에 효율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? | 10 | 10 | 9 | 8 | 7 | 6 |
| 추진 역량 (50) | · 사업계획이 무형문화재 발굴· 보호에 적합한가? | 10 | 10 | 9 | 8 | 7 | 6 |
| | ·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? | 20 | 20 | 18 | 16 | 14 | 12 |
| | ·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와 배치가 적절한가? | 10 | 10 | 9 | 8 | 7 | 6 |
| | · 해당 지자체의 추진 의지 및 관심이 적극적인가? | 10 | 10 | 9 | 8 | 7 | 6 |
| 효과성 (20) | · 종목 현황에 적합한 사업계획인가? · 종목을 지속적으로 전승하는 데 효과적인 사업인가? | 20 | 20 | 18 | 16 | 14 | 12 |
| 합 계 | | 100 | | | | | |

□ 세부 추진일정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사업 공고 | '23. 5월 3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문 시행(문화재청→광역 지자체) ▪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|
| ↓ | | |
| 사업설명회 | '23. 6월 8일(목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광역 및 지자체 담당자 등 대상 |
| ↓ | | |
| 사업계획서 신청/접수 | '23.6.28.(수)~7.7.(금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자체 신청(광역 지자체 수합 제출) ▪ 공문 접수(광역 지자체→문화재청) |
| ↓ | | |
| 평가 | '23.7월 예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▪ 평가 시행 |
| ↓ | | |
| 최종 선정 결과 발표 및 보조금 사전통지 | '23.8월 예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3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▪ '23년 보조금 사전통지(문화재청→지자체) |
| ↓ | | |
| 보조금 확정 통지 | '23.12월 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3년 보조금 확정통지(문화재청→지자체) |
| ↓ | | |
| 워크숍 | '23.12월 예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'22년 우수사례 공유 ▪ 전문가 사업 컨설팅 |
| ↓ | | |
|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| '24.1~2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지 자 체) 사업계획서 보완 및 보조금 교부신청 ▪ (문화재청) 사업지침 및 교부결정 통지 |
| ↓ | | |
| 사업 추진 (지자체) | '24.3~12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지 자 체) 사업 추진 ▪ (문화재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장 모니터링 실시 - 사업 홍보 등 지원 |
| ↓ | | |
| 사업 평가 | '24.12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지 자 체) 사업결과 보고 ▪ (문화재청) 사업평가 |

Ⅲ

행정사항

□ 신청방법

- 본 사업은 광역 지자체 대상 공모대상임
(신청 시 소관 기초지자체의 전승현황 종합적 검토 후 제출)
-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
 - 제출기간: '23. 6. 8.(목) ~ 7. 7.(금)
 -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: 공모신청서(붙임 서식) 공문으로 제출
 - * 종목특성에 따라 여러 시·도에 걸친 사업 포함 가능 (전승현황 조사 등)
 - * 예산편성은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작성

□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예산상황에 따라 선정 및 지원규모, 국비 보조율 등은 변동될 수 있음
- 사업비 산출내역이 과도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* <미래 무형유산 발굴·육성 예산편성 기준>(붙임3) 준수
- 해당 무형유산의 특성과 기 조사·연구 상황, 전승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지역 대표 무형유산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획으로 사업내용 구성
 - * 전승단체 전승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, 단순 축제·행사·교육 지원 사업, 기존 조사·연구 중복 사업 등은 사업 지원 불가
- 선정된 지자체는 우리 청이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취소 및 국비 전액 환수, 다음 연도 심사 시 패널티 적용
 -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대폭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
 - 문화재청 또는 광역 지자체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
- 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은 「보조금법」 및 「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»,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등 관련 법규 준수

- *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
- *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가급적 지자체 직접수행, 시도 출연기관, 법정지원단체 등의 수행을 권고함
- * ‘종목가치 발굴’은 전승단체 직접 시행 불가
‘전승환경 조성’ 및 ‘전승 체계화’는 일부사업 전승단체 시행 가능
(총 예산의 50% 이하)
- 2023년 사업대상 중 2024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월된 경우, 2024년 사업 국비 환수
- 현수막, 리플릿, 보도자료 등 사업 관련 홍보에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·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을 알려야함
- 문화재청은 사업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며,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

□ 문의처: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(042-481-4969)

| 연번 | 제안 종목 | 제안자(단체)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땅설법 | 구○○/윤○○최○○/한○○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|
| 2 | 목계나루 뱃소리 | 중원민속보존회 |
| 3 | 삭힌 흥어 전승과 영양학적 의미 | 김○○ |
| 4 | 삼척 상두산 산맥이 | 김○○ |
| 5 | 서원 제향의례 | 한국의 서원통합보존관리단 |
| 6 | 성학강독(聖學講讀)독서법(讀書法) | 이○○, 최○○ |
| 7 | 안동 하회마을 선유줄불놀이 | 정○○ |
| 8 | 영광굴비 | 강○○ |
| 9 | 울산쇠부리기술 | 울산쇠부리복원사업단 |
| 10 | 웃놀이 | 한국웃놀이보존회 |
| 11 | 종가의례음식 (충청도 덕수이씨 집안의 혼례, 수연례 음식) | 이○○ |
| 12 | 진도지역의 치기형 민속놀이 | 나○○ |
| 13 | 향사례 개설 | 꼭두 |
| 14 | 화성시 정조대왕능행차 및 용릉 제향 | 이○○ |
| 15 | 120년 전통의 농민자치기구 순흥초군청 | 순흥초군청 |

* 해당 종목의 제안자(단체) 연락처 등 상세 사항이 필요한 경우,
무형문화재과로 문의

붙임 2
2022~2023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·육성 사업 선정 종목

| 연번 | 사업명 | 해당 시·도 | 해당연도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1 | 동래(세가닥)줄다리기 발굴·육성 | 부산 동래구 | 2022 |
| 2 | 울주 영등할만네 기록화 및 활용 사업 | 울산시 | 2022 |
| 3 | 속초 돈돌라리 발굴·육성 | 강원도 속초시 | 2022, 2023 |
| 4 | 보은 뽕나무재배와 누에치기 발굴 육성 사업 | 충북 보은군 | 2022, 2023 |
| 5 | 옥천 돌탑과 마을신앙 발굴 육성 사업 | 충북 옥천군 | 2022, 2023 |
| 6 | 보부상 공문제 복원 및 전승기반 구축 사업 | 충남도 | 2022 |
| 7 | 서천 마량리 당제 복원 및 전승기반 구축 사업 | 충남 서천군 | 2022 |
| 8 | 내동마을 인형 제웅 소물이 당산제 | 전북 정읍시 | 2022 |
| 9 | 김 풍작 소원 비세_용지큰줄다리기 | 전남 광양시 | 2022 |
| 10 | 장흥 고싸움 줄당기기 | 전남 장흥군 | 2022 |
| 11 | 내방가사 향유문화 전승의 정착과 확산 | 경북 안동 | 2022, 2023 |
| 12 | 울릉도 나물 관련 음식문화 | 경북 울릉 | 2022 |
| 13 | 의암별제, 교방문화의 싹을 틔우다 | 경남 진주 | 2022 |
| 14 | 제주갈옷 | 제주도 | 2022 |
| 15 | 등곡리 낙화놀이 발굴·육성 사업 | 세종시 | 2022 |
| 16 | 광주 무등산 관부 화전놀이 | 광주시 | 2023 |
| 17 | 울산 처용의식 문화의례 기록화 및 전승기반 구축사업 | 울산 남구 | 2023 |
| 18 | 울주군 골매이 동제 기록화 및 활용사업 | 울산 울주군 | 2023 |
| 19 | 개성식문화 및 의례음식문화 발굴 전승기반 구축 | 경기 연천군 | 2023 |
| 20 | (국민공모) 정조대왕 능행차의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 육성과 확산 | 경기 화성시 | 2023 |
| 21 | 평창 메밀농경과 음식문화 | 강원 평창군 | 2023 |
| 22 | (국민공모) 땅설법 발굴 육성 사업 | 강원 삼척시 | 2023 |
| 23 | (국민공모) 삼척 상두산 산맥이 발굴 육성 사업 | 강원 삼척시 | 2023 |

| 연번 | 사업명 | 해당 시·도 | 해당연도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24 | 제천 연엽초 재배와 건조 기술 | 충북 제천시 | 2023 |
| 25 | 괴산 마을풍수형국과 마을제당 | 충북 괴산군 | 2023 |
| 26 | 당진 합덕 지역의 천주교 상장 의례, 연도의 미래무형유산적 가치 확인과 확산 작업 | 충남 당진시 | 2023 |
| 27 | 충남 벚가릿대 세우기 가치발굴 및 전승기반 구축 사업 | 충남 | 2023 |
| 28 | (국민공모) 진도지역의 치기형 민속놀이 | 전남 진도군 | 2023 |
| 29 | (국민공모) 하회선유줄불놀이 | 경북 안동시 | 2023 |
| 30 | (국민공모) 순흥초군청 제례 및 절기풍속 보존 전승 | 경북 영주시 | 2023 |
| 31 | 남해 매농기 발굴 육성 사업 | 경남 남해군 | 2023 |
| 32 | (국민공모)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| 대구, 충남, 전북 전남, 경북, 경남 | 2023 |

붙임 3

미래 무형유산 발굴·육성 예산편성 기준

1. 예산 지원내용

- 보조금 예산 편성은 다음의 법령, 훈령, 예규에 따름
 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, 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정자치부 예규)
 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)

| 구분 | 내 용 | 지급기준 | 비 고 |
|-----|--|---|----------------|
| 인건비 | 1. 총괄책임자, 연구원, 연구보조 등 - 조사 및 연구,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| 해당 연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 | |
| | 2. 기타 일용직 * 1인 1일(평일 9:00~18:00/8시간) 기준으로 해당 연도 최저임금 준수 |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 | 단순 사무 불가 |
| 운 | 1. 사무용품 구입비(필기구 등) | 실 비 | |
| | 2. 인쇄비 및 유인비: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각종 양식 등 사업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| 견적가 | |
| | 3. 영상제작비: 기록영상, 교육교재 제작 등 사업수행에 따른 영상 제작, 편집 비용 | | |
| 영 | 4. 소모성 재료비: 행사 및 시연 등에 필요한 재료비로,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| 실 비 | |
| | 5.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, 사례금 등 - 자문수당, 조사수당, 학술대회 수당, 원고료 등 | 별첨 참조 | |
| 비 | 6. 공공요금 및 제세 - 우편요금, 택배발송, 퀵서비스,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| 실 비 | |
| | 7. 임차료(장비 임차료 등) | 실 비 | |
| | 8. 안내·홍보물비 - 현수막, 리플릿 등 제작비 등 | 실 비 | |
| | 업무 활동비 | 1. 사업추진비: 보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* 사업비 3% 내외, 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편성 | 실 비 |
| 여비 | 1. 근무지내 출장(동일지역) 2. 근무지외 출장(타지역) ○ 일비, 식비/ 교통비(대중교통, 자가용 등)/ 숙박비 |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| |

※ 지급기준 및 별첨 자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되, 사업의 특성·여건 등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 적정 대가기준 별도 수립 가능

※ 본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규정에 의거, 지자체별 사업특성·여건 등에 따라 자체 판단 적용

2. 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

- 사업비는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·육성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
 - 각종 수당, 인건비, 회의비 등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아야 함
-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,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 됨
 - 구체적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
- ※ 예시) 용역비 10,000,000원 → 편성 불가 / 세부 내역 필요
- 재료비는 세부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만 인정 (노트북, 컴퓨터, 카메라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)
- 회의 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(회의자료 작성, 회의 참석비 등)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
- 일상적 식비 및 간식비 등 편성 불가
-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자문·조사 수당 및 원고료를 수령할 수 없음
- 사업추진비는 보고회 및 조사 등 세부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편성하되 규모를 최소화

※ 지출 불가 항목

- 개인 및 단체에게 지급되는 전승지원금 성격의 경비
-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
- 단순 사무보조 인건비
- 상여금, 초과근무수당 등
-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기관(단체) 운영비
- 상근인력(인건비 지급 대상자)에 대한 각종 수당·원고료 등
- 상품권, 기념품, 답례품 등(조사대상자에 대한 답례품은 가능하나, 경비 편성을 최소화하여야 함)

(별첨)

가. 자문 및 조사수당

| 구분 | 시간 | 지급액 (천원) | 여비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조사수당 | 1일 | 250 |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 |
| 자문회의 | 2시간 미만 | 200 | |
| | 2~3시간 | 300 | |
| | 3~4시간 | 350 | |
| | 4시간 초과 | 400 | |
| 자문의견 | 서면자문(1건) | 150 | |

* 자문회의 시간, 회의참석자의 이동 거리 등에 따라 자문 단가를 조정

* 단순 인터뷰 대상자는 자문비 지급 불가

나. 원고료

| 구분 | 지급기준 | 비고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반원고 | 80원 / 1자 (공백포함) | 조사보고서 및 논문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원고 |
| 강의용 원고 | 60원 / 1자 (공백포함) | (기준면수) 1시간 30면 매 시간 초과 시 20면 |
| (강의용) 파워포인트 | 5,000원 / 1매 - 1시간 강의 시 30매까지 인정 - 2시간 강의 시 50매까지 인정 | |
| 수정원고 등 |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- 70% 초과 수정 시: 전체 지급 - 30~70% 수정 시: 해당 원고료의 50%만 지급 - 30%미만 수정 시: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| |

* 위 단가는 각 항목별 최고액을 의미하며, 난이도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

다. 악보 채보료 및 정사료

| 구분 | 기준 | 채보료 | 정사료 |
|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오선보 | 12행/1면 | 30,000원 | 10,000원 |
| 정간보 | 12행/1면 | 30,000원 | 10,000원 |

* 오선보에서 정간보로, 또는 정간보에서 오선보로 진행할 때에는 오선보를 기준으로 함

라. 구술채록

| 구분 | 기준 | 지급료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구술채록 | 200자 원고지 1매당 | 10,000원 |

* 단, 난이도별로 30%내 가감이 가능

마. 번역료

| 언어 | 지급기준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한국어 → 외국어 (1자당) | 외국어 → 한국어 (1단어당) *일본, 중국은 1자당 |
| 영어 | 130원 | 150원 |
| 일어 | 80원 | 60원 |
| 중국어 | 120원 | 120원 |
| 독어, 불어, 스페인어 | 150원 | 170원 |
| 러시아, 아랍, 인도네시아, 말레이어 | 160원 | 180원 |
| 한자 번역 | 한자 1자당 500원 | |

*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요율표 참고 (기타 언어는 개별 산정)

단, 난이도별로 30%내 가감이 가능하며, 감수료와 교정료 합산액은 총 번역료의 30%내에서 추가 지급을 할 수 있음

바. 강사수당

| 구분 | 지급기준 | 지급액 (천원) | 지급대상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|
| 일반강사 (I) | 최초1시간 | 이론 230 | -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- 시민단체, 민간기구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인중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, 무형문화재 보유자 |
| | | 실기 160 | |
| | 초과 (매시간) | 이론 120 | |
| | | 실기 90 | |
| 일반강사 (II) | 최초1시간 | 이론 120 | - 대학 강사 - 시민단체 및 민간기구 부서장급 이상,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사 |
| | | 실기 100 | |
| | 초과 (매시간) | 이론 100 | |
| | | 실기 50 | |
| 일반강사 (III) | 최초1시간 | 이론 90 | - 일반강사 I. II 이외의 자, 무형문화재 이수자 |
| | | 실기 70 | |
| | 초과 (매시간) | 이론 70 | |
| | | 실기 40 | |
| 실습보조 | 최초1시간 | 50 | - 각종 실기실습 등 보조자 |
| | 초과 (매시간) | 20 | |

*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며, 운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

사. 정사진 촬영료

| 등 급 | 단가(1컷) | | 경 력 기 준 |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디지털 | 아날로그 (원판) | | |
| A등급 | 60,000원 | 65,000 |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| 10년 이상(연간 1회 이상) |
| | 이하 | 이하 |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| 10년 이상 또는 30회 이상 |
| B등급 | 50,000원 | 55,000 |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| 5년 이상 ~ 10년 미만 |
| | 이하 | 이하 |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| 5년 이상 ~ 10년 미만 또는 15회 이상 ~ 30회 미만 |
| C등급 | 40,000원 | 45,000 | 국립기관 사진촬영경력 | 5년 이하 |
| | 이하 | 이하 | 유관기관 사진촬영경력 | 5년 미만 또는 15회 미만 |

* 경력은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부여된 간행물로 증명

* 단가는 3천만화소 이상 1컷을 기준으로 하며, 후보정작업 포함

* 촬영대상, 촬영기간, 연출 필요정도 등 촬영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각 등급 단가 내에서 촬영 단가를 산정 조정할 수 있음

아. 공연 및 출연수당

| 구 분 | 자 격 기 준 | 지급액(천원) |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---|--|
| 문화예술 공연가 특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○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+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○ 시도무형문화재보유자+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○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+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 +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+ 해당분야 업무 10년 이상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+ 해당분야 업무 15년 이상 | 1시간 | 550 | 30분 이상일 경우 |
| 문화예술 공연가 1등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 +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○ 시도무형문화재전승교육사 +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○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+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+3년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+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+ 해당분야 업무 9년 이상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+ 해당분야 12년 이상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+ 해당분야 업무 15년 이상 | 1시간 | 450 | 1시간 으로 인정/ 30분 미만일 경우 |
| 문화예술 공연가 2등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 +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○ 시도무형문화재이수자 +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○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+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+ 3년 이상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+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+ 해당분야 업무 8년 이상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+ 해당분야 업무 10년 이상 | 1시간 | 350 | 50%만 지급 |

| 구 분 | 자 격 기 준 | 지급액(천원) |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---|----|
| 문화예술 공연가 3등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도무형문화재전수자 +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학위소지자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+ 해당분야 업무 3년 이상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+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+ 해당분야 업무 7년 이상 | 1시간 | 250 | |
| 문화예술 공연가 4등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문화재 종목을 전수받은 자 (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)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학위소지자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+ 해당분야 업무 2년 이상 ○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+ 해당분야 업무 4년 이상 ○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에 해당하는 자 | 1시간 | 150 | |